

제3077호
2024. 3. 27.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편집인 : 홍 보 담 당 관 유 진 영
전화 :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자 치 법 규

선	기관 의 장
람	

구 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자치법규

[조례]

제1752호 :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1753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1754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11
 제1755호 :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1756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제1757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제1758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훈령]
 제186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35
 [입법예고]
 제2024-36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0

● 공 고

제2024-341호 : 공인 신조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43
 제2024-343호 : 공인 신조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44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52호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3조”를 “지역보건법 제13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13조”를 “지역보건법 제13조 및”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보건지소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를 “보건지소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 및 건강지도자 양성”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건강지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건강지도자증) 구청장은 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건강지도자 자격을 부여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지도자증을 발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이미 건강지도자 자격을 부여받아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그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제20 - 호

건강지도자증

사 진

3cm×4cm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뒤 쪽)

소 속: 서울 중구 보건소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색상: 연파랑 / 크기: 54mm×85mm
- 재질은 지류 또는 플라스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참여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지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지소 주민건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13조----- ----- ----- -----.</p>
<p>제3조(설치 등) ① 지역보건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3조(설치 등) ①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 -----.</p>
<p>제6조(운영) ① ~ ③ (생략)</p> <p>④ 보건지소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신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강화 및 건강지도자 양성을 ----- -----.</p> <p>⑤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건강지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0조(건강지도자증) 구청장은 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건강지도자 자격을 부여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지도자증을 발급한다.</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구민 건강증진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강지도자의 저변 확대를 위해 건강지도자 양성교육과 활동 예산 지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건강지도자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건강지도자 교육 및 활동 예산 지원 규정 구체화 (제6조)
 - 1) 건강지도자 양성 교육 소요경비 지원
 - 2)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건강지도자에 대하여 활동비 지원
- 건강지도자 교육수료자 건강지도자 자격 부여 및 건강지도자증 발급(제1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53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을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으로 하고,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제52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제52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유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6호를 삭제하고, 제5조 각호 외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재지				화장실 명칭									
지역구분		설치		관리책임		소속							
설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관리주체	년도	공무원	직급	성명							
	관리인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p> <p>① (생략)</p> <p>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 제52조제1항 및 제3항-----제54조제1항-----</p>
<p>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p> <p>-</p> <p>----- 유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5. (생 략)</p> <p>6.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신 설)</p>	<p>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5. (현행과 같음)</p> <p>6. <삭 제></p> <p>②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적용한다.</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이용객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표준안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광진흥법 조문이동 현행화 및 위임방식을 단순 명확화(제3조)
-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자의 책무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책무 추가(제4조)
- 제5조제2항 신설규정 추가로 조례 구성상 현행 제5조를 제5조제1항으로 조문번호 변경 및 중복된 내용의 제5조제6호 삭제(제5조)
-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의무 대상 지정여부 및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종류 및 설치 대수가 관리되도록 반영(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54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분쟁의 예방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4.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속여 임차료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의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중구에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중개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중구의 임대차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 피해 및 분쟁 사례, 관계 현황,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중구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및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임차인 보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로 늘어나고 있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통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 및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적용대상 건물 규정(제3조)
- 구청장 및 공인중개사의 책무 규정(제4조~제5조)
-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항(제6조~제1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55호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상권의 자립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권관리 전문기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한다.

제2조제11호에 “상권관리 전문기구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를 신설한다.

제30조를 제34조로 이동한다.

제30조제1항에“구청장은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사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을 상권관리 전문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30조제2항에“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구를 지정할 때 전문기구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31조제1항에“상권관리 전문기구에서는 중구 정책과 부합한 사업실행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이하 이 조에서“전통시장 등”이라 한다.)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실행
2. 지역상인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업
3. 전통시장 등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 및 육성
4. 전통시장 등의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전통시장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제31조제2항에“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관리 전문기구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32조제1항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권관리 전문기구에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사무소 및 운영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32조제2항에“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33조제1항에“구청장은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상권관리 전문기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이 조례 및 관련 규정(협약 등)을 위반한 경우
3. 전문기구로서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을 신설한다.

제33조제2항에“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전문기구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필요한 사항과 상권의 자립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권관리 전문기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0. (생략)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0. (현행과 같음) 11. “상권관리 전문기구”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 설>	제30조(상권관리 전문기구 지정) ① 구청장은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사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을 상권관리 전문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구를 지정할 때 전문기구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상권관리 전문기구의 사업) ① 상권관리 전문기구에서는 중구 정책과 부합한 사업실행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이하 이 조에서 “전통시장 등” 이라 한다.)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실행 2. 지역상인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업 3. 전통시장 등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 및 육성 4. 전통시장 등의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전통시장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청장이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위탁하는 사업</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관리 전문기구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32조(상권관리 전문기구에 대한 지도·감독)</p> <p>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권관리 전문기구에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사무소 및 운영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33조(상권관리 전문기구 지정의 취소)</p> <p>① 구청장은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상권관리 전문기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이 조례 및 관련 규정(협약 등)을 위반한 경우 3. 전문기구로서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전문기구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p>1. 제·개정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구 전통시장 등 상권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관협력 기구 지정 운영을 통하여 지역 상권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상권관리 전문기구 지정 및 지정기준 (제30조) ○ 상권관리 전문기구의 사업(제31조) ○ 상권관리 전문기구에 대한 지도·감독(제32조) ○ 상권관리 전문기구 지정의 취소(제33조) ○ 시행규칙(제34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56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지방의회 의장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민 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법 위임 사항을 적시에 반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 결정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함 (안 제11조의2 신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57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연서·날인한 명부”를 “연서·날인한 명부[별지 제1호 서식]”로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의장에게 보고”를 “의장에게 보고[별지 제2호 서식]”로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의장에게 보고”를 “의장에게 보고[별지 제3호 서식]”로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의장에게 보고”를 “의장에게 보고[별지 제4호 서식]”로 개정한다.

별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교섭단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대표의원 인영부 및 소속의원 명부

대표의원 인영부

성명		직인	사인
한글			
한문			

소속의원 연서·날인명부

연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명	인

년 월 일

○○○ 대표의원 (직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변경 보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 “구분” 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대표의원 인영부

성명		직인	사인
한글			
한문			

소속의원 연서·날인명부

연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명	인

※ 1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서명” 란은 불요

년 월 일

○○○ 대표의원 (직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변경)보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이동보고

대 상 의 원		이 동 사 항			비 고
소속정당	성 명	일 자	내 용	사 유	

※ 이동사항중 “내용” 란에는 “교섭단체 탈퇴”, “신규가입” 등을 기재

정당변경 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 ○ ○ 대표의원 (직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7항에 따라 당적취득(소속정당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당적 취득보고

의원성명	당적 취득사항		비 고
	취득한 정당명	취 득 일 자	

소속정당 변경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 ○ ○ (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귀하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효율적인 중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교섭단체의 등록, 변경 등에 관한 서식을 별지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섭단체 등록, 변경등록 등에 관한 서식 추가(안 별지)
 - 대표의원 인영부 및 소속의원 명부
 - 교섭단체 명칭 변경 보고
 -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 보고
 - 당적 취득 보고
- ※ 본 조례 제3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관련된 서식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58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초·중등학교 학생들의”를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로 개정한다.

제2조 중 “구”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일반성인”으로 각각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제2조의 학생”을 “제2조에 따른 참가자”로 하고, 제2항제3호 중 “학생지도를 위한”을 “참가자 지도를 위한”으로 각각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제6조, 제7조로 변경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구성) 의장은 제2조에 따른 모의의회 및 의회체험활동의 참가자를 각각 4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선발 방법) ① 참가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학교, 학생, 성인 중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② 의장은 다양한 참가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사회단체 등의 기관장 추천을 통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예산 등의 지원) ① 의장은 모의의회 및 의회체험활동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구의회 홈페이지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구 소재 학교에 지원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모의의회 개최 및 의회체험활동 기간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견학하게 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모의의회 참가자를 위한 의원 및 공무원의 역할을 지정해 줄 수 있다.
 - ④ 모의의회 개최 및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참가자들에 대한 기념품 제공이나 이동 차량의 지원 등 최소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통하여 미래세대의 자치 의식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 ----- ----- -----
제2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구 소재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2조(대상) ----- --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 -----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일반성인-----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의장은 제2조의 학생에 대한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모의의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를 위한 의원 및 공무원 역할 지정에 관한 사항 4. 장소 지원 및 시설 견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의장은 제2조에 따른 참가자----- ----- ----- ② ----- ----- 1. ----- ----- 2. ----- ----- 3. 참가자 지도를 위한 의원 및 공무원 역할 지정에 관한 사항 ----- 4. ----- ---- 5. ----- -----

현 행	개 정 안
<p><신 설> ※ 제4조를 제6조로 변경</p>	<p>제4조(구성) 의장은 제2조에 따른 모의의회 및 의회 체험활동의 참가자를 각각 4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p>
<p><신 설> ※ 제5조를 제7조로 변경</p>	<p>제5조(선발 방법) ① 참가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학교, 학생, 성인 중 지역, 성별, 나이를 고려하여 선발한다. ② 의장은 다양한 참가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사회단체 등의 기관장 추천을 통하여 선발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6조(예산 등의 지원) ① 의장은 모의의회 및 의회 체험활동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구의회 홈페이지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소재 학교에 지원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모의의회 개최 및 의회체험활동 기간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견학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모의의회 참가자를 위한 의원 및 공무원의 역할을 지정해 줄 수 있다. ④ 모의의회 개최 및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참가자들에 대한 기념품 제공이나 이동 차량의 지원 등 최소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교 학생 및 성인의 모의의회 참가, 의회체험활동 확대를 통해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선진의회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 성인, 학생 등이 다양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생’을 삭제
- 참가대상 확대(안 제1조~제2조)
- 구성 및 선발 방법 등 규정 신설(안 제4조~제5조)
- 참가자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훈령 제186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한다.
2. "상황관리"란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난안전시스템"이란 재난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및 재난안전통신망 등 재난의 관제, 예보, 경보, 전파에 필요한 시설·장비 일체를 말한다.

제2장 설치 및 임무

제3조(설치 및 임무) ① 각종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초동보고, 신속한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둔다.

② 상황실은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과 상황근무자로 구성하고, 상황실장은 재난상황 전파·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 및 야간에는 중구청 종합상황실 당직사령을 상황실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상황실장과 상황근무자는 각각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상황실장
 - 가. 상황실 업무 총괄
 - 나. 주요 간부 및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등에 상황보고 및 전파
 - 다.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동
 - 라. 각종 재난상황 종합판단 및 상황보고 지휘
 - 마. 유관기관·단체와 협조지원체계 확립 및 유지
2. 상황근무자
 - 가. 재난상황의 신고 접수, 전파, 보고
 - 나. 재난안전시스템 운영
 - 다. CCTV 등 재난상황 모니터링
 - 라. 재난안전 상황보고서 작성
 - 마. 주요 재난상황 정보 파악 및 분석
 - 바. 주요 재난 발생 시 관계부서 직원의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
 - 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사고 수습 부서·기관과 긴밀한 협조·지원
 - 아. 그 밖에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상황실 운영 및 복무

제4조(지휘 및 복무감독)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을 지휘·감독한다.

②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에 대한 업무 및 복무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상황실 운영) 상황실은 연중무휴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제6조(상황실 근무 편성) ① 제3조의 임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근무인원은 1명 이상 5개조 3교대로 편성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명절, 연말연시 등 연휴기간 비상근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상황실 근무 편성 인원 중 휴가 또는 교육훈련 등이 예정된 경우
4.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근무시간 및 복무) ①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상황에 맞게 편성·운영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근무개시 10분 전에 출근하여 직전 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하면서 재난관리상황을 인계·인수하여야 하고, 합동근무 시간은 시간외 근무 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상황근무자는 당직 또는 행사지원 등 기타 근무에서 제외한다.

④ 상황근무자는 별표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을 따른다.

제4장 상황보고 및 전파

제8조(상황보고 및 전파) ① 상황실장은 주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고,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부서, 유관기관 등에 그 사실을 전파하여 신속한 대응·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지속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해당기관 등으로부터 향후전망, 조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파악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방법) ① 상황실장은 재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한 보고가 필요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 조치 후 보고를 할 수 있다.

② 각종 상황보고의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활용하되, 상황에 따라 서면, 구두, 전화, 모사전송(FAX),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체계) ①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관내 소재하는 유관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대비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장 기록 유지 및 장비 관리

제11조(기록 및 관리) ① 상황실장은 주요 재난 수습상황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상황보고·전파체계도, 유관기관과 재난안전상황실 연락처, 별표의 근무수칙, 주요 재난 관련 매뉴얼 등을 상황실에 갖추어 두고 수시로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장비관리)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및 장비의 관리를 총괄하며, 재난안전시스템 및 영상회의시스템 등 연계장비와 통신회선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안관리

제13조(문서 및 장비보안)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제14조(보안관리) ①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상황실의 각종 시스템 및 시설에 대하여 정보통신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 및 재난안전업무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7장 인사 및 근무환경 등

제15조(결원보충)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상황관리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훈련)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근무환경 조성) ①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전산·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상황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초과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을 지급하고, 간식 등 근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 으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위해 운영 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임무(제3조)
- 상시운영, 근무시간 및 근무수칙 설정 (제5조~제7조)
- 재난상황 보고·전파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제8조~제10조)
- 기록 유지 및 장비 관리, 보안관리(제7조)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361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의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독립유공자 및 의사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정책을 서울시 조례와 일원화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의 요금(별표1)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유족증)을 제시한 사람에 대해 주차요금 100분의 80 할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자로서 의사자증을 제시한 사람에 대해 주차요금 100분의 80 할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주차관리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중구청), 문의전화: 3396-6264, FAX: 3396-8873, 메일: rokaff@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341호

공인 신조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신조 등록 및 폐기하는 공인을 동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자동인증기 공인 교체 및 미사용 폐기
- 2. 사용개시일 및 폐기일 : 2024. 3. 27.
- 3. 등록 및 폐기 공인 내역

● 등록 공인

구 분	공 인 명	인 영	규 격 및 서 체	비 고
신 조	광희동장인 민원사무전용 (종직인)		2.1cm × 2.1cm 서울남산체EB	

● 폐기 공인

구 분	공 인 명	인 영	규 격 및 서 체	비 고
폐 기	광희동장인 민원사무전용 (종직인)		2.1cm × 2.1cm 전서체	
폐 기	광희동장인 민원사무전용 (종직인)		2.1cm × 2.1cm 서울남산체EB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343호

공인 신조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신조 등록 및 폐기하는 공인을 동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자동발급기, 통합인증기 직인 서체 및 부서 명칭 변경으로 인한 교체
- 2. 사용개시일 및 폐기일 : 2024. 3. 27.
- 3. 등록 및 폐기 공인 내역

● 등록 공인

구 분	공 인 명	인 영	규 격 및 서 체	비 고
신 조	중구청장의인 부동산정보과민원용 (종직인)		2.4cm × 2.4cm 서울남산체EB	
신 조	중구청장의인 부동산정보과민원용 (종직인)		2.4cm × 2.4cm 서울남산체EB	
신 조	중구청장의인 부동산정보과민원용 (횡직인)		2.4cm × 2.4cm 서울남산체EB	

● 폐기 공인

구 분	공 인 명	인 영	규 격 및 서 체	비 고
폐 기	중구청장의인 지적발급용 (종직인)		2.4cm × 2.4cm 한글전서체	
폐 기	중구청장의인 토지관리과민원용(1) (종직인)		2.4cm × 2.4cm 서울남산체EB	
폐 기	중구청장의인 토지관리과민원용(1) (횡직인)		2.4cm × 2.4cm 서울남산체EB	
폐 기	중구청장의인 토지관리과민원용(2) (종직인)		2.4cm × 2.4cm 서울남산체EB	
폐 기	중구청장의인 토지관리과민원용(2) (횡직인)		2.4cm × 2.4cm 서울남산체EB	